

APAAC 2025 참가 규정

○ 1. 계약금 규정

- 계약금 : 신청서(계약서) 제출 후 2주내 총 참가비의 30% 입금 원칙
- 잔 금 : 2025년 8월 8일(금) 까지 잔금 입금 원칙
- 부스 설치비용 및 기타 부대시설비용 등의 결제는 은행 송금으로 가능
- 송금 시 발생하는 모든 은행 수수료는 참가업체가 부담
- 세금계산서 발행 일정과 계좌 정보 등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2. 취소/환불 규정

- 2025년 8월 8일(금) 까지 취소 시 : 총 참가비 50% 환불
- 2025년 8월 9일(토) 이후 취소 시 : 환불 불가

○ 3. 참가 신청 마감 기한 : 2025년 8월 8일(금) 까지

제1조 (용어의정)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행 사>라 함은 '2025 제8회 아태안티에이징컨퍼런스 및 전시회(APAAC 2025)'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아태안티에이징학회 및 학회가 업무를 위임한 공식 대행사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행사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APAAC 2025 참가신청/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2주 이내에 계약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금을 납입함으로써 본 규정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조기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관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비 등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전시면적 배정)

1. 주관자는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참가 신청 순서, 국적, 전시품의 성격, 참가신청 면적, 참가자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전시자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여 전시자 별 전시 부스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제품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 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사전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류를 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접착제, 제품 이동 등으로 인한 시설의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직접 진행해서는 아니되며, 시설의 손상에 대해 주관자와의 협의 및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6.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참가비 납부)

1. 참가 업체는 신청서(계약서) 제출 후 2주 이내에 계약금 30%를 납부하고, 2025년 8월 8(금) 18:00까지 전시참가비 잔금 등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신청마감기한 이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100% 완납하여야 한다.
3. 전시자가 부스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전시회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미납할 경우, 주관자는 완납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6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1. 전시자가 규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 본인이 APAAC 2025 사무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직접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APAAC 2025 사무국에서는 취소 신청을 확인한 후 참가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2. 본 조 1항의 통보가 2025년 8월 8일(금) 18:00까지 수령된 경우 주관자는 전시자로부터 받은 참가비 중 취소한 전시면적에 해당하는 참가비의 50%만을 환불한다. 동 취소통보가 2025년 8월 9일(토) 이후에 주관자에게 수령된 경우에는 참가비를 일절 환불하지 아니한다.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주관자는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또는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배정된 전시 면적 내로의 장치, 전시품 반입 및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며, 반출을 지연시킬 경우, 주관자 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보호)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방화규칙)

1. 전시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져야 한다.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보충규정)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3. 전시자는 주관자 및 EXCO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전시자는 주관자가 ESG 관련 요청 사항(탄소 배출 감소, 설문지 작성 등)이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참가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상기 참가 규정을 동의합니다.

회사명 :

대표자 :

(인)

제8회 아태안티에이징 컨퍼런스 및 전시회 사무국 귀중